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7.31.] [국토교통부령 제424호, 2017.6.8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고,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

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·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,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전에 소화전·비상벨의 유무를 확인·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·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

개정문

○ 국토교통부령 제424호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7년 6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 (인)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"로 하고,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토 지	소재지		지 목	공부상 지목	
	면적(㎡)			실제이용 상태	
① 대상물건의 표시	전용면적(㎡)		용도	대지지분(㎡)	
				건축물대장상 용도	
	건축물	구조		실제 용도	
				방 향) (기 준 :	
	내진설계 적용여부			내진능력	
	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		[] 위반 [] 적법	위반내용	

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⑩ 내부·외부 시설물의 상태(건축물)란 중 소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	다동경보 형감지기	[] 없음 [] 있음(수량: 개)	※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(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)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.
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지 제20호서식(영문서식) p.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"Article 2 (1), 6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를 "Article 3 (1), 5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로 하고,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Description of premises	Land	Location		Land Category	Category on the ledger	
		Area(m ²)			Actual status	
	Building	Net area(m ²)		Use	Land share(m ²)	
		Year of completion (year of addition/remodelin g)			Use on building ledger	
		Structure		Direction	(based on:)	
		Seismic design		Seismic capacity		
		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	[] illegal [] legal	Matters of violation		

별지 제20호서식(영문서식) p.2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(building)란 중 Firefighting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Firefighting	Stand-alone fire alarm detector	[] no [] yes (Quantity: ea)	※ As Only houses except for apartments(houses with five or more floors to be used as housing) are designated as residential fire-fighting facilities specified in Article 8 of the Act on Installation, Maintenance, and Safety Control of Fire-Fighting Systems and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"로 하고,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상물건의 표시	토 지	소재지		지 목	공부상 지목	
		면적(㎡)			실제이용 상태	
	건축물	전용면적(㎡)		용도	대지지분(㎡)	
		준공년도 (증개축년도)			건축물대장상 용도	
		구조		방 향	(기준:)	
		내진설계 적용여부		내진능력		
		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	[] 위반 [] 적법	위반내용		

별지 제20호의2서식(영문서식) p.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"Article 2 (1), 6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를 "Article 3 (1), 5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로 하고,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Description of premises	Land	Location		Land Category	Category on the ledger	
		Area(㎡)			Actual status	
	Building	Net area(㎡)		Use	Land share(㎡)	
		Year of completion (year of addition/remodeling)			Use on building ledger	
		Structure		Direction	(based on:)	
		Seismic design		Seismic capacity		
		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	[] illegal [] legal	Matters of violation		

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3서식(영문서식) p.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"Article 2 (1), 6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를 "Article 3 (1), 5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
별지 제20호의4서식(영문서식) p.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"Article 2 (1), 6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를 "Article 3 (1), 5,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"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